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76

발의연월일: 2024. 6. 26.

발 의 자: 박지혜・박지원・정진욱

양부남 · 강유정 · 황정아

이훈기 · 송재봉 · 문금주

채현일 • 이병진 • 박해철

박희승 • 이건태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로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3호 및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전단등 살포를 빌미로 행해지는 북한의 적대적 조치 억제를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고자 하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였음.

이에 기존 형벌로 규정되었던 전단등 살포 행위에 대한 벌칙 방식

을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 과태료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막음과 동시에 남북간의 불필요한 갈등 요소의 선제적 방지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고자함(안 제26조 신설 등).

법률 제 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단등의 살포 행위

제25조제1항 본문 중 "제24조제1항을"을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4조제1항 각 호의"를 "제2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6조(과태료) ① 제2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제24조제1항제3호의 금지행위가 규정된 것에 한정한다)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	금지) ①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			
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			
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			
서는 아니 된다.	<u>.</u>		
1.・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3. 전단등 살포</u>	3. 전단등의 살포 행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벌칙) ① <u>제24조제1항을</u>	제25조(벌칙) ① <u>제24조제1항제1</u>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호 및 제2호를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u>제24</u>			
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가	제24조제1항제1호		
규정된 것에 한정한다)의 효력	<u>및 제2호의</u>		
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26조(과태료) ① 제24조제1항제		
	3호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제24조제1항 제3호의 금지행위가 규정된 것 에 한정한다)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통일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